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 적용 대상에 제주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추가 등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7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법 적용 대상에 제주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추가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5. 14.

다. 회 부 일 : 2026. 5.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 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이하 “국제학교 등”이라 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임.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기본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처럼 국제학교 등을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구축하고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법 적용 대상에 제주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추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제주 소재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되, 가해자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시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의3. (생략)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의3. (현행과 같음) 2.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u> -----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u><신설></u>	

<신 설>

3. ~ 5. (생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
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
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② ~ ⑪ (생략)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 · 운영하는 국제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
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
국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⑱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¹⁾, 대안학교²⁾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를 두지 않는 국제학교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교육기관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

구분	학교	법적 근거
적용	일반 초·중고	「초·중등교육법」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학교	법적 근거
미적용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이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로서 국내에서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이 크게 ‘외국교육기관’³⁾과 ‘제주 소재 국제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소재 국제학교 개요]

구분	외국교육기관	제주 소재 국제학교
목적	경제자유구역 등 거주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⁴⁾
설치 현황	인천, 대구 경제자유구역 내 3개교 ⁵⁾ ※ 초·중등 교육과정 담당 기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4개교 ⁶⁾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⁷⁾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그러나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 역시 졸업 시 대한민국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고⁸⁾, 내국인 재학생 비율이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평균 92.1%,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균 68.5%가 넘는 등 재학생 수의 과반이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 다양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참고로, 해당 학교들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개인이 「민법」 제755조⁹⁾에 따른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 즉 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5) चे드워송도국제학교(인천),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

6) 한국국제학교, 노스던턴컬리지에잇스쿨제주, 브랜섬홀 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9)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무능력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구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법」, 「소년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가하는 절차로 처리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별 내국인 재학생 비율 >
(단위: 명, %)

구분		외국인 재학생 수	내국인 재학생 수	전체 재학생 수	내국인 재학생 비율
외국 교육기관	채드윅송도 국제학교(인천)	632	824	1,456	56.6
	칼빈매니토바 국제학교(인천)	133	371	504	73.6
	대구 국제학교(대구)	89	272	361	75.3
제주 국제학교	한국 국제학교	27	961	988	97.3
	노스관단칼리지 에잇스쿨제주	117	1,165	1,282	90.9
	브랭섬홀 아시아	100	786	886	88.7
	세인트존스 베리아카데미	83	892	975	91.5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를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되, 가해자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시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폭력 처리 시 자의적 기준이 아닌 법률상 기준에 근거하여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

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의 자율성 보장 측면 및 관련 내부 규정이 이미 제정·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는 ①외국교육기관법 및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¹⁰⁾,

②대구 국제학교를 제외한 모두가 ‘국제학력기구 기준’에 부합한 학생의 안전·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이미 제정·운영 중이며, 해당 규정에서는 교내 봉사, 정학, 퇴학, 교직원 중재 하의 회복적 접근 등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규정 >

구분	학교명	규정 명칭
외국 교육기관	채드윅송도 국제학교 (인천)	- Handbook Review and Divisional Policies Related to School Violence(2025)
	칼빈매니토바 국제학교 (인천)	- 학생 행동 수칙
	대구 국제학교 (대구)	-
제주 국제학교	NLCS Jeju (노스런던 컬리지 에잇스쿨 제주)	- Anti-Bullying Policy (반-집단따돌림 정책) - Student code of conduct and Rules of the school (교내학생행동강령) -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olicy (정신건강 복지 정책) - Safeguarding and Child Protection Policy and Procedure (아동보호정책 및 절차)
	KIS (한국국제학 교)	- School and Dorm Life Guide (학교 및 기숙사 생활 지침)
	BHA (브랭섬홀 아시아)	- Anti-Bullying Response Procedures (반-집단따돌림 대응절차)
	SJA Jeju (세인트존스 베리아카데미 제주)	- SJA Jeju Elementary/Middle/High School Student Parent Handbook (학생-학부모 핸드북)

자료: 교육부

둘째,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조치, 학급 교체 등) 이행 가능성, 외국인 재학생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그 소관 법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

요가 있음.

현재 학교폭력에 관한 일반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은 그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에 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특별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바¹¹⁾, 이와 같은 현행 법률 체계를 고려하여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소관 법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주의 국제학교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안¹²⁾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넷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에 대해서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가해학생 조치 수준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학교폭력의 양태 및 비난가능성 등 이외에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동종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학교별로 제재 수준이 달라 질 수 있음에

1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8

따라 제재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은 국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적절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함
- 다만 국제학교 등의 자율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초·중등교육법」을 기반으로 성립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쏠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필요한 학교폭력예방법 내 각 조항의 선별, 법 체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시·도교육청(제주)

- 「제주특별법」 제228조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은 기존 국제학교(NLCS, SJA Jeju, BHA)에 운영 중인 학교폭력 관련 규정과 중복되며, 중복 및 과도한 절차로 제주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함
-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국제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학교폭력실태조사 운영, 학교폭력 발생 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국제학교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사립학교법」 제62조에 준하는 징계의결 등 국제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부족

○ 시·도교육청(경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외국인학교)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학교는 동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6」에 명기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관리'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학교폭력 행위에 따른 제재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제주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가해학생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187